

공 고

구로구공고 제2017-1235호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하여 주민 제안에 의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2016.10.06)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2.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07.19)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3249)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	-	10,451.4	10,451.4	-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변동 가능

2) 정비계획(안)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451.4	100.0	-
획 지	소 계	10,240.9	98.0	건축물 기부채납 (도서관, 어린이집 일부)
	획 지	10,240.9	98.0	
정비기반	소 계	210.5	2.0	-
시설 등	도 로	210.5	2.0	기부채납

②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451.4	-	10,451.4	100.0	-
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0,356.4	감) 10,356.4	-	-	-
	준주거지역	-	증) 10,356.4	10,356.4	99.1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5.0	-	95.0	0.9	-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오류동길	일반 미관지구	오류동 297-10~ 오류동 118-2	10,376	707	양측 12	2007. 9.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319호)	동부철강 부지측 제외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590 (52)	오류동 166-20	오류동 216-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	8~12	국지 도로	590 (52)	오류동 166-10	오류동 216-2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 확폭

※ ()는 사업지내 연장임

- 학교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구로구 오류동 산39-40 일대	9,267	감) 22	9,245	서고시 제50호 (8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④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정(안)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2016.10.06)】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지상 1층	-	300	300	
	어린이놀이터	지상층	-	570	570	
	주민운동시설	지상층	-	650	650	
	휘트니스 센터	지상 1,2층	-	1,350	1,350	커뮤니티시설: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0%이상

▶ 변경(안)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지상 1층	-	300	300	
	어린이놀이터	지상층	-	570	570	
	주민운동시설	지상층	-	650	650	
	휘트니스 센터	지상 1,2층	-	1,450	1,450	커뮤니티시설: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0%이상

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후 이 주
-	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10,451.4	획지	10,240.9	오류동 213-1번지일원	31	-	-	31	-

- 건축시설계획

▶ 기정(안)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2016.10.06)】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10,451.4	획지	10,240.9	오류동 213-1번 지 일원	공동주택 판매설 등	60% 이하 (40.77%)	495.9% 이하 (469.57%)	83.8m (83.4m) /지상 28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 고		
			합 계				481세대	100.0			
			분 양	계				330세대	68.6		
				전용면적 60㎡이하				155세대	32.2		
				전용면적 85㎡이하				175세대	36.4		
				전용면적 85㎡ 초과				-	-		
			장기전세	계				151세대	31.4		
				전용면적 60㎡이하				147세대	30.6		
				전용면적 85㎡이하				4세대	0.8		
				전용면적 85㎡ 초과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오리로변 : 건축한계선 3m • 오리로9길 : 건축한계선 3m								
비 고			• 공공기여 - 어린이집 : 연면적 총 632.7㎡ 중 218.9㎡ 기부채납 - 도서관 : 1,798.76㎡ 기부채납(토지지분 : 316.77㎡) ※ 추후 인허가 과정(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동 될 수 있음.								

※ 상기 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안)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10,451.4	획지	10,240.9	오류동 213-1번 지 일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60% 이하 (40.76%)	495.9% 이하 (439.03%)	83.8m (79.13m) /지상 26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 고
							합 계		440세대	100.0	
			분 양		계		269세대	61.1			
					전용면적 60㎡이하		7세대	1.6			
					전용면적 85㎡이하		262세대	59.5			
					전용면적 85㎡ 초과		-	-			
			공공임대		계		171세대	38.9			
					전용면적 60㎡이하		171세대	38.9			
					전용면적 85㎡이하		-	-			
					전용면적 85㎡ 초과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오리로변 : 건축한계선 3m • 오리로9길 : 건축한계선 3m								
			• 공공기여 - 어린이집 : 연면적 총 645.49㎡ 중 231.59㎡ 기부채납 - 도서관 : 1,835.23㎡ 기부채납(토지지분 : 336.54㎡) ※ 추후 인허가 과정(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동 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토지지분은 기정 구립어린이집(오류동 213-10번지) 토지면적 277㎡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지분과 함께 건축물 연면적 총 645.49㎡ 중 231.59㎡ 제외한 413.9㎡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님.								
비 고											

※ 상기 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

⑥ 정비사업 시행계획

▶ 기정(안)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2016.10.06)】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이레 H&C	481세대	-

▶ 변경(안)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주)이레 H&C	440세대	-

⑦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임대주택

▶ 기정(안) 【구로구공고 제2016-1214호(2016.10.06)】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0㎡이하	80㎡초과	합계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50% (11,674.62㎡)	60%내외	30%내외	10%내외	100%	-
계획	12,426.24㎡	147세대 (97.4%)	4세대 (2.6%)	-	151세대 (100.0%)	-

▶ 변경(안)

기 준		전용면적				비 고
		60㎡이하	60㎡~80㎡이하	80㎡초과	합계	
기준	완화된 용적률의 50% (11,674.62㎡)	60%내외	30%내외	10%내외	100%	-
계획	11,723.76㎡	171세대 (100%)	-	-	171세대 (100.0%)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안) 참조

바. 관련도서 : 생략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신설, 새정부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신설된 조직 업무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

- 다문화정책과(5급기구) 신설에 따른 업무 규정
-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 신설에 따른 업무 규정

나. 기타 불필요한 어휘 삭제 : 안 제2조 제목 중 “단장”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860-2311 FAX : 860-2631 E-mail : elecman1@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단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 다문화정책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외국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노인 시설 지원, 노인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르신시설 지원, 어르신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 다문화 민관 협의체 운영, 다문화 관련 행사 및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 단장 및 실장 ·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생 략)	제2조(국장 및 실장 · 담당관 · 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획경제국) ① (생 략)	제4조(기획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채용우수기업의 인센티브,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 -----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u>청년정책에 관한 사항</u>
4. ~ 7 (생 략)	4. ~ 7 (생 략)
제5조(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u>어르신</u> <u>청소년과</u> , 교육지원과, 환경과를 둔다.	제5조(생활복지국) ① ----- ----- <u>어르신</u> <u>청소년과</u> , <u>다문화정책과</u> -----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육구조사, <u>외국인지원에 관한 사항</u>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육구조사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u>어르신 · 아동 · 청소년복지</u> , <u>노인시설 지원</u> , <u>노인여가 지원</u> 에 관한 사항	4. <u>어르신 · 아동 · 청소년복지</u> , <u>어르신 시설 지원</u> , <u>어르신여가</u> -----
<신 설>	5. <u>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u> , <u>다문화 민관 협의체 운영</u> , <u>다문화 관련 행사 및 인식 개선 교육</u> 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25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신설, 새정부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신설된 조직과 이관부서의 업무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신설
- 나. 팀신설 등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 신설삭제
- 다. 기타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860-2311 FAX : 860-2631 E-mail : elecman1@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3호 중 “국·단 또는 실·과”를 “국 또는 실·과”로 한다.

제8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중 “어르신청소녀과장”을 “어르신청소녀과장·다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 관련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다문화 지원 정책 발굴
3.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문화 서포터즈단 운영
9.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
10.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33조(중전의 제32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37조(중전의 제36조)제15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방법용 CCTV설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중전의 제37조)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48조(중전의 제47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23. 다른 국·단 또는 실·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기획예산과) ----- -----. 1. ~ 22. (현행과 같음) 23. -- 국 또는 실·과----- -----
제8조(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일자리지원과)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10조(징수과) ----- -----. 1. ~ 8. (현행과 같음) 9.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여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제12조(생활복지국) ----- ----- ----- -----

현행	개정안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u>어르신청소녀과장</u>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 <u>어르신청소녀과장·다문화정책과장</u> ----- ----- ----- -----.
제14조(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 14. (생략) 15. <u>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u> 16. <u>다문화센터 지원 및 다문화 관련 업무</u> <u><신설></u>	제14조(여성정책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u> 9.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u><삭제></u> <u><삭제></u> 제17조(다문화정책과) <u>다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다문화 관련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u> 2. <u>다문화 지원 정책 발굴</u> 3. <u>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관한</u>

현행	개정안
	<u>사항</u> 4. <u>다문화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u> 5. <u>다문화 가족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u> 6. <u>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다문화 가족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다문화 서포터즈단 운영</u> 9. <u>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u> 10. <u>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u> 11. <u>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u>
<u>제17조 ~ 제21조</u> (생략)	<u>제18조 ~ 제22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u>제22조</u>(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u>제23조</u>(도시재생과) ----- -----. 1. ~ 8. (현행과 같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현행	개정안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u>제23조 ~ 제31조</u> (생략)	<u>제24조 ~ 제32조</u> (현행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u>제32조</u>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제33조</u> (주차관리과)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16. 자동차번호판(과태료 관련) 영치에 관한 사항</u>	<u><삭제></u>
<u>제33조 ~ 제35조</u> (생략)	<u>제34조 ~ 제36조</u> (현행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u>제36조</u>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제37조</u> (자치행정과)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15. 방법용 CCTV설치에 관한 사항</u>
<u>15. ~ 29.</u> (생략)	<u>16. ~ 30.</u> (현행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
<u>제37조</u>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제38조</u> (문화관광과)-----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12. 하천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	<u><삭제></u>
13. ~ 16. (생략)	12. ~ 15. (현행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38조 ~ 제46조 (생략)	제39조 ~ 제47조 (현행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와 같음)
제47조(진료과목 운영) ① 보건소에 1차 진료실, 영유아·모성실, 결핵실, 방문보건실, 건강증진정보센터, 구강보건실을 두고 각 실에는 의사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둔다.	제48조(진료과목 운영) ① ----- ----- ----- ----- 지방 임기제공무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 ~ 제50조 (생략)	제49조 ~ 제51조 (현행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25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신설, 새정부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신규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1,291명 ⇨ 1,312(21명 증)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조례안 제3조 【별표2】)

- 개정사유 : 효율적인 의장의원 및 구의회 위상제고를 위한 별정직비서(7급→6급) 직급상향
-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현 행	(20)% 이내	(20)% 이내	(60)% 이내
변경 후	(20)% 이내	(40)% 이내	(40)% 이내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조례안 제4조 【별표 3】)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2(+21)	1,312(+21)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306(+21)	1,306(+21)			
3급		1	1			
4급		7	5	1	1	
5급		61(+1)	35(+1)	1	10	15
6급 이하 계		1,235(+20)	1,234(+20)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4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860-2311 FAX : 860-2631 E-mail : elecman1@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1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별표 2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55)% 이내	(20)% 이내	(31)% 이내	(33.5)% 이내	(85)% 이상	0.5%이내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20)% 이내	<u>(40)% 이내</u>	<u>(40)% 이내</u>

비 고

1.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2	1,31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306	1,306			
3급	1	1			
4급	7	5	1	1	
5급	61	35	1	10	15
6급 이하 계	1,235	1,235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5	5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4	4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u>서울특별시 구로구에</u>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91명으로 하고,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u>서울특별시 구로구에</u>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12명으로 하고,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6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별표 2]				[별표 2]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비율	(20)% 이내	(20)% 이내	(60)% 이내	비율	(20)% 이내	(40)% 이내	(40)% 이내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91	1,291					총 계	1,312	1,312			
정무직		(생 략)					정무직	(현	행	과	같 음)	
일반직 계	1,285	1,285					일반직 계	1,306	1,306			
3급			(생 략)			3급	(현	행	과	같 음)		
4급			(생 략)			4급	(현	행	과	같 음)		
5급	60	34	1	10	15	5급	61	35	1	10	15	
6급 이하 계	1,215	1,215					6급 이하 계	1,235	1,235			
전문경력관 계		(생 략)					전문경력관 계	(현	행	과	같 음)	
별정직 계		(생 략)					별정직 계	(현	행	과	같 음)	
5급 상당			(생 략)			5급 상당	(현	행	과	같 음)		
6급 상당 이하 계		(생 략)					6급 상당 이하 계	(현	행	과	같 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26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신설, 새정부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신규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 일반직 공무원

구분		변경내역
계		증21
5급(증1)		행정 1명
6급 (증5)	증(5명)	행정 3명, 간호 1명, 별정직(비서) 1명
7급 (증8)	증(12명)	행정 7명, 세무 2명, 사회복지 2명, 임기제시설 1명
	감(4명)	전기운영 1명, 시설관리 2명, 별정직(비서) 1명
8급 (증4)	증(4명)	행정 3명, 시설(토목) 1명
9급 (증3)	증(3명)	임기제공업 1명, 임기제보건 1명, 임기제조리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 860-2311 FAX : 860-2631 E-mail : elecman1@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 표]

서울특별시구로구직급·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12	849	26	111	326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6	846	23	111	326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0
서기관		5	4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61	35	1	10	15
행정		43	26	1	1	15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	2			
행정·보건·환경·공업		1	1			
의무·약무		7			7	
의무·약무·간호·보건		1			1	
6급 소계		243	177	5	16	45
행정		156	108	5	6	37
세무		11	11			
사회복지		9	4			5
공업		7	7			
시설		17	17			
의료기술		1			1	
약무		1			1	
운전		5	5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3	3			
행정·사회복지		4	1			3
행정·시설		3	3			

행정·보건·수의	3	1		2	
행정·보건·공업·환경	1	1			
공업·환경·보건	2	2			
행정·약무·보건·의료기술	2			2	
약무·간호·보건	1			1	
간호·보건	3			3	
시설관리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1	1			
7급 소계	392	276	10	30	76
행정	211	144	5	7	55
세무	33	33			
사회복지	28	10			18
전산	3	3			
공업	16	16			
녹지	3	3			
시설	31	31			
보건	4	1		3	
환경	3	3			
약무	3			3	
간호	11			11	
의료기술	4			4	
농업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6	12	1	1	2
방호	2	1	1		
시설관리	4	4			
숙기	3		3		
행정·전산	1	1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전기운영	3	3			
건축운영	1	1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워드운영)	3	2			1
8급 소계	380	248	3	39	90
행정	176	111	2	4	59
세무	24	24			
사회복지	36	14			22
전산	3	3			
사서	1	1			
공업	12	11		1	

녹지	3	3			
시설	33	33			
보건	10	3		7	
환경	1	1			
간호	13			13	
의료기술	6			6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운전	30	18	1	2	9
방호	4	3		1	
시설관리	2			2	
위생	0				
조리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4	2		2	
농림운영(원예)	1	1			
사무운영(워드운영)	11	11			
사무운영(필기운영)	1	1			
9급 소계	220	102	3	15	100
행정	54	27	2	7	18
세무	5	5			
사회복지	93	15			78
전산	1	1			
공업	4	4			
시설	16	16			
녹지	4	4			
환경	3	3			
방송통신	1	1			
운전	22	17		1	4
위생	1	1			
전기운영	6	6			
사무운영(필기운영)	1		1		
보건	1			1	
조리	1			1	
의료기술	5			5	
행정·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소계	2	2			
화생방	2	2			
별정직 계	5	2	3		
5급상당 소계	1		1		
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2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구로구직급·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 (제2조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구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구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91	831	26	108	326	총 계	1312	849	26	111	326
정무직 계		(생		략)		정무직 계	(현	행	과	같	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285	828	23	108	326	일반직 계	1306	846	23	111	326
3급 소계		(생		략)		3급 소계	(현	행	과	같	음)
(생 략)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생		략)		4급 소계	(현	행	과	같	음)
(생 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60	34	1	10	15	5급 소계	61	35	1	10	15
행정	42	25	1	1	15	행정	43	26	1	1	15
(생 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239	174	5	15	45	6급 소계	243	177	5	16	45
행정	153	105	5	6	37	행정	156	108	5	6	37
(생 략)						(현행과 같음)					
간호·보건	2			2		간호·보건	3			3	
(생 략)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383	267	10	30	76	7급 소계	392	276	10	30	76
행정	204	137	5	7	55	행정	211	144	5	7	55
세무	31	31				세무	33	33			
사회복지	26	8			18	사회복지	28	10			18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	30	30				시설	31	31			
(생 략)						(생 략)					
시설관리	6	6				시설관리	4	4			
(생 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4	4				전기운영	3	3			
(생 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376	244	3	39	90	8급 소계	380	248	3	39	90
행정	173	108	2	4	59	행정	176	111	2	4	59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	32	32				시설	33	33			
(생 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9급 소계	217	101	3	13	100	9급 소계	220	102	3	15	100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업	3	3				공업	4	4			
(생 략)						(현행과 같음)					
〈신설〉						보건	1			1	
조리	0					조리	1			1	
(생 략)						(현행과 같음)					
전문경력관 계		(생		략)		전문경력관 계	(현	행	과	같	음)
나군소계		(생		략)		나군소계	(현	행	과	같	음)
별정직 계		(생		략)		별정직 계	(현	행	과	같	음)
5급상당 소계		(생		략)		5급상당 소계	(현	행	과	같	음)
(생 략)						(현행과 같음)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비서	2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3	1	2			비서	2	1	1		